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
직제 일부 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윤호중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인권위원회에 이주민 인권보장 강화 기반 조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(4급 또는 5급 1명, 6급 1명) 및 노인 인권보장 기반 조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5급 1명)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12. 17. ~ 12. 22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중 총계 “202”를 “205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197”을 “200”으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190”을 “193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정원대비표

[별표 2]

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13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202</u>	<u>205</u>	+3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197</u>	<u>200</u>	+3
·	·	·	
3급 또는 4급 이하	<u>190</u>	<u>193</u>	+3
·	·	·	
·	·	·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28